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0. . .
발 의 자	이선우 의원 외 8명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이선우 · 김재우 · 박교상 · 송용자
안장환 · 안주찬 · 이지연 · 장미경
홍난이 의원(9인)

1. 제안이유

- 가. 거리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진흥을 통하여 지역 문화 발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2조)
- 나. 시장 및 거리예술가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거리예술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질서유지를 위한 거리예술 활동기준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20. 2. 17. ~ 2. 24.) 결과 의견없음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구미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장소 지정 등
4.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을 위한 환경 조성지원
5.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거리예술 장소 운영)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본 조례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원을 위한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거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근거로 세부지원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 허정주(480-6612)